

장학금 지급 규정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 학생생활위원회는 장학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 2. 장학생 선발 사정기준 3. 기타 장학금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학생생활위원회는 장학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정책 2. 기타 장학금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제4조(신청시기) 장학금의 신청은 학기 초 장학담당부서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복학 등의 학적변동자의 장학금 신청, 시간근로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장학금 수혜희망자는 소정의 "장학금신청서"와 장학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부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담당부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삭제
제6조(복학생의 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복학생은 복학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았던 학생은 복학 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③ 휴학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복학 시에 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6조 (복학생의 장학금 신청) ① 휴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았던 학생은 복학 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② 휴학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복학 시에 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7조(장학사정 주관부서 및 주기) 장학사정은 장학담당부서의 장학사정관이 주관하여 학기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장학금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고,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경제사정곤란자 정의) 경제사정곤란자라함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는 범위 또는 별도의 서류로 경제적사정곤란자임을 확인한 범위까지를 의미한다.
제8조(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 본 대학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의 종류별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장학금	제8조(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 본 대학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의 종류별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장학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문 탐구, 글로벌 소양 함양 및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운영한다.
나. 지곡장학금: 기본장학금으로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이공계),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정부장학금, 외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곡장학금을 지급한다.	나. 지곡장학금: 신입생 중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등 교외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곡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곡장학금의 계속지원 조건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다. 성적우수 장학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POSTECH 우수인재육성 장학금: 입학성적이 극히 우수하고, 세계적 과학인재로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소정의 인원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3) 경시대회 장학금: 본 대학 주최 경시대회 입상자 중 본 대학 입학 시 경시대회 성적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4) 생략 5) 성적우수 장학금의 2), 3)은 중복수혜할 수 없으며, 성적우수 장학금의 장학금 계속지원 성적기준은 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지곡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6) 성적우수 장학생에 대한 선발인원, 선발기준,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 	<p>다. 성적우수 장학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동일 2)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입학위원회에서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세계적인 과학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3) 경시대회 장학금: 폐지 4) 현행과 동일 5) 삭제 6) 성적우수 장학금의 종류, 선발 및 지급 기준,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
<p>라. 근로장학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기근로장학금: 학생 개인의 가정경제 여건을 평가하여 그 곤란도에 따라 일정인원을 선발하여 60시간 내외의 근로의무를 부과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시간근로장학금: 근로소요 발생 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월 50시간 내외의 근로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의무 완수 시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계절학기 시간근로는 30시간 내외로 한다. 3) Student Mentor Program 장학금: Student Mentor Program에 참여하는 Mentor들에게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4)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장학금: 학부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5) Residential College Advisor 장학금: Master 교수를 보좌하며 각 학생그룹에 대한 상담과 공동체 생활 등 Mentor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6) 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표본 추출 후 제출된 증빙 서류를 조사, 확인하여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및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7) 장학생 선발 방법, 지급절차 및 장학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p>라. 근로장학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기근로장학금: 경제사정곤란자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학기 중 교내 행정업무 보조 등 근로봉사를 제공한 학생에게 생활비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시간근로장학금: 근로소요 발생 시 희망자 신청을 받아 교내 행정업무 보조 등의 근로 수행 후 대학이 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월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 내외로 한다. 3) Student Mentor Program 장학금: Student Mentor Program에 참여하는 Mentor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4) Student Advisor 장학금: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 지원, 분반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Advisor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5) Residential College Advisor 장학금: 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Advisor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6) 장학생 선발, 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마. 기부장학금: 기부자가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p>	<p>마. 면학장학금: 기본장학금 장학생 중 경제사정곤란자에게 면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p>
<p>바. 특별장학금: 장애학생, 학생활동 봉사 학생 및 갑작스런 가정경제 여건의 악화 등 인정할 만한 긴급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학생처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선발절차와 장학금액은 별도로 정한다.</p>	<p>바. 특별장학금: 재해,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 등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학생처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장학생 선발, 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p>
<p>사. 해외연수장학금: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인원 등은 따로 정한다.</p>	<p>사. 해외연수장학금: 해외 교환학생, 어학연수, 방문학생, 현장학습 및 인턴십 등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 선발, 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p>
<p>아. 외부장학금 유치 학생 교재비 지원: 장학재단, 기업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유치한 학생에게는 일정금액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p>	<p>아. 연구지원장학금: 학부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 선발, 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p>
<p>신설</p>	<p>자. 봉사 장학금: 학생회, 학생자치단체 등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 및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학생에게 소관부서 처장 또는 주임교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장학생 선발, 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p>
<p>신설</p>	<p>차. 디딤돌 장학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장학금 지급대상은 대학에 장애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금의 지급기준, 장학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p>
<p>신설</p>	<p>카. 기금장학금: 기부자가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p>

장학금 지급 규정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이중수혜 금지) ① 모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수혜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특별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은 예외로 한다.</p> <p>② 중복수혜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p>	<p>제9조(이중수혜 금지) ①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생활비지원 성격의 장학금 및 학업장려비 장학금 등 등록금 지원 장학금 외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다.</p> <p>② 교외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이중수혜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기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p>
<p>제10조(보전지급) 교외장학금, 기부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액이 등록금액 이하일 때에는 그 차액을 보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보전지급)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액이 등록금액 이하일 때에는 그 차액을 보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 납입 시 사전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교외장학금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11조(지급방법) 등록금지원 장학금은 사전에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등록금을 고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등록금 납부기간의 경과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금 납부기간 중: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 처리 2. 등록금 납부기간 종료 후: 대학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명의 계좌로 지급 <p>다만, 장학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p>
<p>제12조(장학금 지급의 제한) ① 학사과정 9학기 이상 재학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복수전공자는 10학기까지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으나 복수전공을 신청한 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추후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근로 장학금,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p> <p>② 학기근로장학금은 학기말 개인별 근로평가에 따라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 A = 지급총액의 100% 지급 2. 평가 B = 지급총액의 80% 지급 3. 평가 C = 지급총액의 50% 지급 4. 평가 D = 전액 미지급, 차기년도 선발 제외 <p>③ 학기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중 휴학, 제적, 근로포기, 기타의 사유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p> <p>④ 장학금 수혜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다음 학기의 모든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p> <p>⑤ 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지역장학금(동일한 지급기준을 따르는 성적우수 장학금 포함)을 제외한 모든 교비장학금은 직전학기 10학점 미만을 취득하거나 평균평점 2.0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간근로장학금,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장학금은 예외로 하고, 교외장학금은 지원기관이 정한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르며, 지역장학금의 계속지원 조건은 국가장학금(이공계)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2.28)</p>	<p>제12조(장학금 지급의 제한) 해당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장학금의 경우 학적변동 후 재적생인 경우 학적변동 전날까지 활동한 내용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 9학기 이상 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복수전공자는 10학기까지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으나 복수전공을 신청한 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추후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근로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연구지원장학금, 특별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교내장학금은 직전학기 10학점 미만을 취득하거나 평균평점 2.0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간근로장학금, 연구지원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④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지급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신입생이 입학 후 첫학기 휴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군휴학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⑦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은 해당 기관이 정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른다.
<p>제13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3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위원회 결의와 위임전결 규정을 따른다.</p>